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3- 604호

불법주·정차 과태료 사전통지기간 단축에 따른 행정예고

불법주·정차 과태료 사전통지기간을 단축함에 있어,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5월 22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1. 행정예고 내용

: 불법주·정차 과태료 사전통지기간 단축

2. 관련근거

: 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(주차위반에 대한 조치)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

3. 행정예고 목적

: 불법주·정차 과태료 사전통지기간 단축 시행에 대한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.

4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3. 5. 22.(월) ~ 2023. 6. 11.(일) (21일간)

5. 행정예고방법 : 서울 중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게시

6. 행정예고 대상 : 불법주·정차 과태료 사전통지기간 단축시행

- 단축기간 :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변경

- 시행일(예정) : 2023. 7. 1. 단속건부터 적용

7. 의견제출방법

본 행정예고(공고)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붙임)를 서울중구청 주차관리과로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전송 후 유선 연락)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, 연락처 등
- 3) 기타 필요사항 등
- 4) 의견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전송 후 유선 연락)
- 5) 의견 제출기한 : 2023. 5. 22. ~ 2023. 6. 11. (21일간)
- 6) 문의 및 제출

- 우 편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별관2층 서울중구청 주차관리과 우)04558

- 유 선 : 서울중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관리1팀(☎02-3396-6254)

- 팩 스 : 02) 3396-8869

- 7)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붙임 의견제출서(서식) 1부. 끝.

